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제36조제1항 관련)

1. 인력기준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다만, 2)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3) 대학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2. 장비기준

소방시설	장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 폴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럭스

비고

1.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가 중복될 때에는 이를 하나만 보유할 수 있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4. 절연저항계는 최고전압이 DC 500V 이상, 최소눈금이 0.1MΩ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